



제 432회 국회 (임 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고용주등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후 3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서범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80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범수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18.
3. 회부연월일 : 2025. 12.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에 대한 사고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024년 도로교통공단 연구에 따르면, 3년간 7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상습위반자로 분류되며, 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은 일반 운전자에 비해 4.4배 높고, 50회 이상 위반자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 대비 9.6배에 달하는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횡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과태료 금액 자체도 낮아 반복적인 위반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부과를 통해 실질적인 억제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횡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상습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3항 후단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차 또는 노면전차가 신호(§5), 전용차로(§15③), 속도(§15③), 정차·주차 금지(§32), 적재중량·용량(§39), 휴대전화 사용금지(§49①10),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50③) 등을 위반한 것이 사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었으나, 위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3년 이내에 다시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고용주등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0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0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제3항·제5항, 제14조제2항·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5조의2제1항	제160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 -----

현행	개정안
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 ¹⁾ 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한국ITS학회²⁾가 2024년에 실시한 연구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무인단속 상습 적발자를 정의했는데, 그 결과 최초 적발 이후 3년간 7건 이상 적발된 경우 상습적발자(680,125대, 5.34%), 7회 미만의 경우 일반 적발자(12,059,340대, 94.7%)로 분류함.³⁾

동 연구에 따르면, 상습 적발자의 적발 차량 1만 대당 사고 수는 일반 적발자의 2.32배이며, 상습 적발자의 적발 차량 1만 대당 사상자 수는 일반 적발자의 2.21배임. 적발 차량 1만 대당 도로교통 사고 비용은 상습적발자가 일반 적발자의 2.04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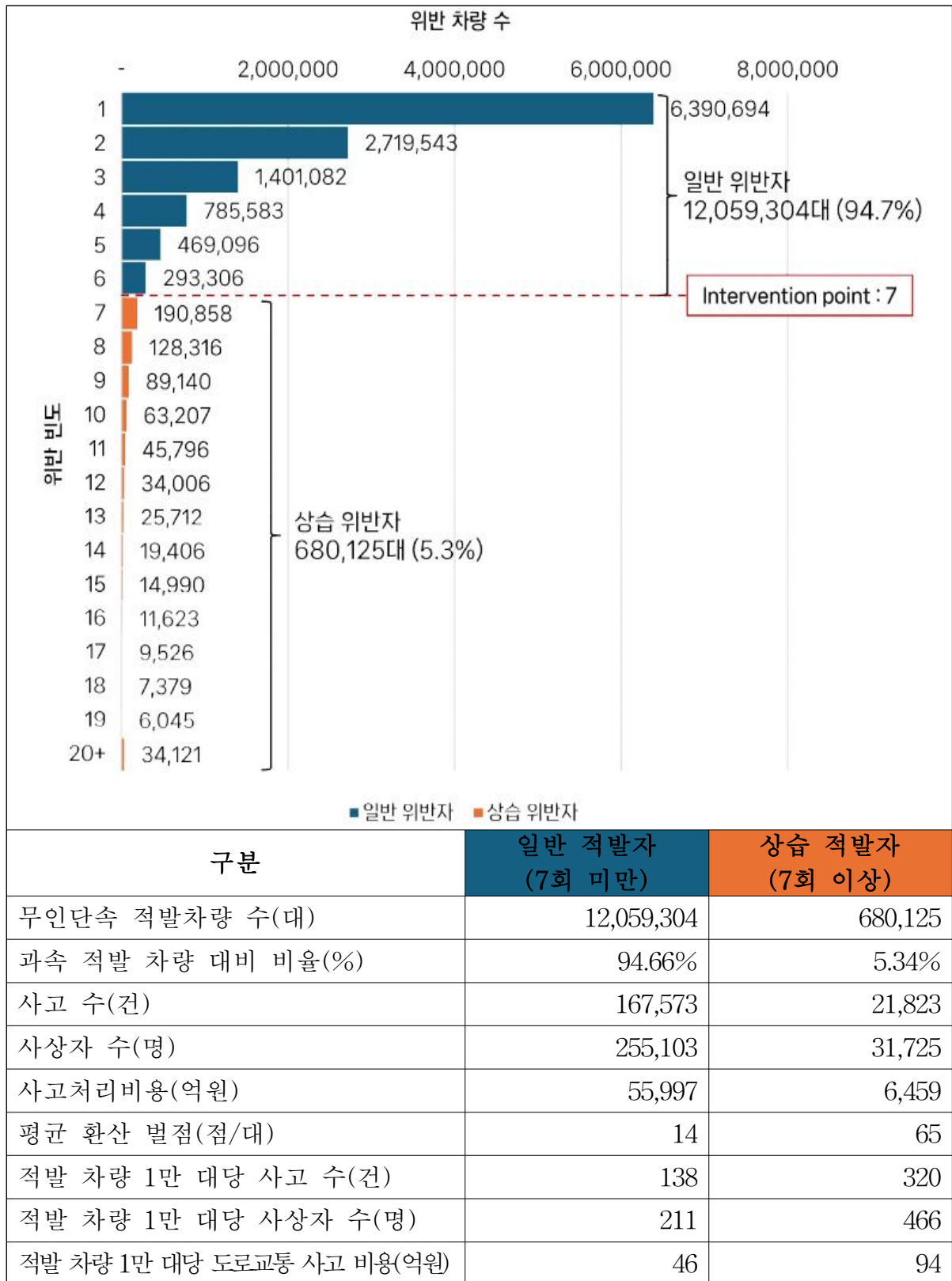
1)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2) 한국ITS학회의 영문 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임.

3)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ITS학회(책임연구원: 김정화, 공동연구원: 박준영, 조준한, 장효석, 최관), “무인단속 효과 제고를 위한 상습 적발자 관리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24. 11.

상습 적발자 정의 및 일반 적발자와 비교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ITS학회, “무인단속 효과 제고를 위한 상습 적발자 관리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56면

개정안을 통해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태료를 한번 부과받은 운전자는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보다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제안이유에 따르면 개정안은 2024년 도로교통공단의 연구를 근거로 상습위반자(상습 적발자)에 대해 과태료를 과중하여 부과하도록 하려는 취지이고, 해당 연구에서는 상습 적발자를 3년간 7회 이상 적발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의 가중 부과대상을 법률에서 3년간 7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즉, 개정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3년 동안 7회 미만의 일반 적발자(12,059,340대, 94.7%)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고, 이 경우 과태료 가중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상습적발자 중 무인단속 카메라 등에 적발된 경우 고용주등에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만 가중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상습 적발자 중에는 운전자가 3년 내 7회 이상 경찰관의 현장 단속에 적발되어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칙금을 중과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경찰청은 일반적인 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함으로써 교통법규 준수율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제도의 실효성과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전체 과태료 항목 중 사망사고 위험도가 높은 4대 항목(제한속도 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대상을 제한하고, 가중 처분 요건을 ‘연간 3회 이상 위반’으로 구체화하며,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설정하는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정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